

경운대학교 직원인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직원인사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사무처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,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임면권자가 직원을 신규채용,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